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험자 면책사유에서 「통합방위법」에 따른 침투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 제외〉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22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6. 25.
3. 회 부 일 : 2024. 6.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가 대남전단살포 등 북한 도발행위에 따른 상해 등 인명 피해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살포로 차량 앞유리 파손 등 시민 피해가 속출합니다.

억울한 손해인데 현행법은 차량 피해보상만 가능합니다. 상해 등 인명피해는 전쟁 면책 적용으로 보상이 제외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통합방위법」상 침투·도발 등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전쟁면책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재산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안 제660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보험사고가 「통합방위법」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¹⁾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원인이 된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0조).

현행	개정안
第660條(戰爭危險 等으로 因한 免責) 保險事故가 戰爭 其他의 變亂으로 因하여 생긴 때에는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없으면 保險者는 保險金額을 支給할 責任이 없다. <신설>	제660조(전쟁위험등으로 인한 면책) ①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에-----약정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가 「통합방위법」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원인이 된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현행법에서는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12. “방호”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하여 전쟁위험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전쟁위험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 전쟁은 국가 간의 교전상태로서 선전포고 유무는 불문하고, 변란은 내란, 폭동 또는 소요와 같이 일상적인 경찰력으로는 통제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전쟁에 준하는 비상상태를 말함.²⁾

-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한 폭행, 협박 등의 집단행동에 의해 통상의 경찰력으로는 적어도 한 지방에서의 평온 또는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태를 의미함.

- 소요란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의미함.

□ 개정안은 「통합방위법」상 침투, 도발 등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를 전쟁위험 면책에서 제외함으로써 최근 대남전단살포 등 북한 도발 행위에 따른 피해의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 및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행위로 인한 피해³⁾ 등을 지원할 수 있는

2) 박세민, 보험법 제6판, 2021, p.321

3)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 6. 10.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차량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규모는 향후 신고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음(2024. 6. 10.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 신속 지원”).

다른 법적 근거가 없고, 보험의 경우 그 계약내용에 따라 피해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보험제도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장래의 우연적, 돌발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내란, 폭동, 소요 등과 같이 사고발생의 예측 곤란과 피해 극대화를 이유로 한 면책사유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⁴⁾는 점에서 「통합방위법」에 따른 침투, 도발, 위협, 방호로 발생한 상황이 폭동 또는 소요에 이르지 않는 한 이로 인한 손해가 현행법상 전쟁 또는 기타의 변란으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음.

- 참고로 최근 보험업계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는 전쟁 등으로 인한 면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음(금융위원회).

○ 한편, 「통합방위법」에 따른 침투, 도발, 위협, 방호로 인한 손해의

4)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지진, 분화,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사태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빈도나 그 손해정도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타당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시에는 사고의 대형화와 손해액의 누적적인 증대로 보험자의 인수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있는바, 본래 보험제도 자체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장래의 우연적, 돌발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고발생의 예측 곤란과 피해 극대화를 이유로 한 면책사유의 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에 열거된 면책사유 중 소요는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55975 판결).

경우 그 개념이 불확정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고 발생의 빈도나 그 손해 정도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난해하고, 사고발생 시 보험자의 부담이 엄청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쟁위험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쟁위험 면책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의견 역시 제기될 수 있음.⁵⁾

- 참고로 전쟁위험 면책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자가 전쟁위험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⁶⁾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법무부**는 전쟁위험 면책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강행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전쟁위험 면책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법조문 간 충돌이 발생하고, 글로벌업계 동향에도 배치되며,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까지 소급적용하는 경우 보험사가 계약 당시 산정했던 보험료 수준을 상회하는 위험까지 인수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적절하고, 오물풍선 등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미 보험업계에서 보험금 지급 중이므로 법 개정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사와 계약자 간 분쟁 방지를

5) 한국상사법학회는 침투, 도발, 위협, 방호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위험성 측정 및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계산과 증명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침투, 도발, 위협, 방호와 같은 불측의 위험에 대해서까지 「상법」에서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약관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현행의 체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6) 실무상 추가보험료를 지급하고 전쟁, 소요 등에 대한 담보특약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중동지역에서 전쟁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지역을 항해하는 원유수송선을 대상으로 추가보험료를 받고 전쟁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함(박세민, 앞의 글, p.322).

위해서는 전쟁, 기타 변란과 침투·도발 등 간에 명백한 구분이 필요하고, 침투·도발 등에 대한 예상손해액 등 통계 산출 및 재보험 출제가 어려우며, 침투·도발 등으로 사고발생 시 손해의 지역적 범위와 손해액이 매우 커 보험자의 인수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고, 침투·도발 등을 면책에서 제외 시 보험료율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5